2025년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 육성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개요

□ 사업목적

○ 초기 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

○ 유망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내용)**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지원규모)** 총 13개사 내외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조정·확정됨**

○ **(지원예산)** 최대 1,000만원 ~ 3,000만원, 분야별 상이

- 지원금은 사업비(100%)의 70%~90% 이내(부가세 및 관세 제외)
- 선정기업은 사업비(100%)의 10%~30%이상 현금부담 필수

○ **(신청방법)** 참여기업-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기업이 신청

- 참여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제작기업: 디자인전문회사,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등

○ **(선정방법)** 접수-서류심사-발표심사-원가심의-지원금결정-협약체결

○ **(지원방식)** 중간보고 검수 후 30%, 최종보고 검수 후 70%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범위

지원분야		① 제품디자인	②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1]	③ 시제품금형[2]
지원내용 (적용범위)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지원대상 (모두 충족)	선정기업 (국내)	장애인 예비창업자[3]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3]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제작기업 (국내)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기업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기업, 워킹목업제작능력 보유기업, 소프트웨어개발 기업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최종결과물 (신청범위에 따라 상이)		최종보고서(센터서식),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파일 디자인목업	최종보고서(센터서식),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4]	최종보고서(센터서식), 금형 및 시사출품, 조립 완제품
지원금 지급방식 (사후지급)		중간결과물 점검(평가),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지출 검토 후 30%, 최종결과물 점검(평가),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지출 검토 후 70% ※ 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제출 필수		
지원규모		13개사 내외		
지원금액 *공고문 9페이지 참조		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1)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 기구설계 및 워킹목업을 위한 제품디자인 등을 보유해야 함.

2) **시제품 금형** : 제품개발 완료 및 제품제작도면, 워킹목업 등 보유해야 함.

3) **장애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경우, 최종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협약기간 1/2시점 이내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4)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개발만 해당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동등한 유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구분		자격조건
참여 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최종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하고, 선정 후 협약기간 1/2시점 이내에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제작 기업	디자인 전문회사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제품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또는 **'제품디자인 분야'가 포함된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나. 공고일 현재, 디자인기업** 이면서 **'제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디자인전문회사(지역별, 분야별 조회 가능)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전문 분야가 제품인 디자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디자인"이 기재된 기업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실무경력은 "제품디자인" 분야를 말한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 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학력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디자인 전공자 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 경력자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나.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비전공자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기타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나. 국내·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국내·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이상을 수상한 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시제품목업	• 워킹목업 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으로 디자인 전문회사도 가능
	시제품금형	• 금형 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인 국내 소재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아래의 요건(①~⑫)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

①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② 신청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③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④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가 동일한 과제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⑥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⑦ 휴·폐업 중인 경우

⑧ 개발수행능력(사업화 능력)이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⑨ 주관기관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이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 (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1인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④기술인증 및 마케팅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창업사업화지원사업

우선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⑩ 기타 주관기업의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⑫ **디자인, 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을 주·부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제한**

4 신청 및 접수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연락 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가능 사항만 기재)

○ 접수 마감 이후 추가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 사업 지원자가 서류 및 발표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서류 발급비, 교통비 등 기타 경비는 심사 대상자 본인이 부담

□ 접수기간: 2025. 3. 25. (화) ~ 4. 10. (목) 18:00까지

※ 2025년 4월 10일(목요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날인 필수 및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요망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기업성장부 노수지 앞

○ (이메일) nsj2@debc.or.kr

- 모든 제출서류를 압축파일(.zip)로 변환 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 이메일 제목 형식 : (○○분야) '기업명' 지원 / 예시: (시제품 금형) 삼성전자 지원
※ 각 제출서류 파일명 : <별지서식>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제출(서류별 개별파일 생성 후, 서류명 입력)
※ 압축 파일명 : (○○분야)기업명 제출서류'.ZIP / 예시: (시제품 목업) 삼성전자 제출서류.ZIP

□ 문의: 기업성장부 노수지 주임(02-2181-6535)

□ 제출서류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됨

※ **[붙임2]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서류 준비하며, 향후 센터는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번호		제출 서류	필수	해당	비고
참여기업	1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		공고 - 붙임2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5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① 온라인 : 정부24 (https://www.gov.kr) ②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6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①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① 국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② 지방세 : 정부24(https://www.gov.kr)행정복지센터
	8	견 적 서 *시제품 금형은 [붙임2] 견적서 양식으로 제출	●		제작기업 견적서
	9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10	지원분야 관련 증빙서류(제품설계 및 목업, 시제품 금형 분야)	●		공고 - 2페이지 하단 참고
	1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개월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https://www.4insure.or.kr/)
	13	매출 증빙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14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서(등록원부 등)		●	사본 제출
	15	대표자 중증장애인 확인서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심한 장애)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부24사이트,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16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17	사회적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포털 등(https://www.seis.or.kr)
	18	장애인고용 증빙 (장애인직원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사본 제출
	19	센터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수상 증빙자료 사본 제출
	20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 증빙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증 서류)		●	사본 제출
	21	장애인대표자 저소득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① (수급자) 정부24 (https://www.gov.kr) (차상위)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2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당해연도 포함 최근 2년 이내)		●	센터 교육사이트: http://start.debc.or.kr
제작기업	23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		공고 - 붙임2
	2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2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26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분야 업종확인)	●		①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 관할 세무소
	2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개월 이내 발급분)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28	디자인기업 참여인력 증명서 (졸업, 경력, 자격증, 전년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		●	사업 공고 12~13 페이지 [첨부1] 사업비 계상기준 – '인건비' 부분 참고
	29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한국디자인진흥원(https://designfirm.kidp.or.kr)
	30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	공고 - 붙임2
	3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외부 참여자)		●	

5 지원절차 및 선정심사

□ 지원절차

절차		주관	일정(예정)
1. 사업신청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3. 25.(화) ~
	▼		
	참여기업·제작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참여기업	~ 4. 10.(목)
	▼		
2. 참여기업 선정	선정평가(서류평가 및 결과 안내) *심사 참여를 위한 비용은 심사대상자 본인 부담	센터(평가위원회)	~ 4. 23.(수) 18시 예정
	▼	▼	▼
	선정평가(발표평가) *심사 참여를 위한 비용은 심사대상자 본인 부담	센터(평가위원회)	4.28.(월) ~ 4.30.(수)
	▼		
	선정 결과 통보	센터(홈페이지 게시)	5. 9.(금) 예정
	▼		
3. 협약 단계	지원금 원가조사를 통한 선정기업의 협약금액 확정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원가조사전문기관, 센터	~ 6. 6.(금)
	▼		
	협약체결	센터-선정기업-제작기업	6월~7월
	▼		
	지원사업 전용 통장개설 및 기업부담금 납부, e나라도움 등록,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선정기업 ⇒ 은행,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6월~7월
	▼		
4. 사업수행 * 지원금 사후 지급	과제수행 및 중간보고	선정기업(제작기업)	협약기간
	▼		
	중간점검 및 지원금 지급 (전체 지원금 중 30%)	센터(현장점검단)	협약기간
	▼		
	최종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위탁회계정산기관 날인본 포함)	선정기업(제작기업)	협약기간
	▼		
5. 최종 평가 및 지원금 지급	최종결과물 검수(현장방문) 후 지원금 정산 및 지급 (전체 지원금 중 70%)	센터(현장점검단)	9월 ~ 11월
	▼		
6. 사후 관리	성과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 센터, 선정기업	수시

※ 추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 분야별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업이 협약 기간 중 협약이 해약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차적 지원 예정

□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위원회(5명 내외)를 통한 선정

<table>
<tr><th>구분</th><th>선정기준</th><th>평가기준</th></tr>
<tr><td>1차
서류심사
(4.17.~
22..예정)</td><td>평점 60점 이상,
지원 규모 2배수
이내 발표심사
대상자 선발</td><td>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th></tr>
<tr><td rowspan="3">사업계획의
적절성</td><td>사업계획서의 충실성(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충실성)</td><td rowspan="7">100점</td></tr>
<tr><td>사업타당성 분석(개발 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td></tr>
<tr><td>계획 및 비용의 적절성(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의 적절성)</td></tr>
<tr><td rowspan="2">기술성 및
개발 능력</td><td>과제실현가능성(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의 명확성))</td></tr>
<tr><td>기술경쟁력(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td></tr>
<tr><td rowspan="2">성장성 및
기대효과</td><td>고용 창출 효과 등 성장가능성</td></tr>
<tr><td>상품화 가능성(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td></tr>
<tr><td colspan="2">총점(가점 포함)</td><td>105점</td></tr>
</table>
</td></tr>
<tr><td>2차
발표심사
(4.28.~
30.예정)</td><td>평점 60점 이상,
지원 규모 내에서
고득점자순 선정</td><td>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th></tr>
<tr><td rowspan="2">창업자
사업수행능력</td><td>창업자의 사업의지(사업추진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td><td rowspan="6">100점</td></tr>
<tr><td>창업자의 역량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등))</td></tr>
<tr><td rowspan="2">기술성 및
개발능력</td><td>과제실현가능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 명확성))</td></tr>
<tr><td>기술경쟁력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td></tr>
<tr><td>성장성</td><td>고용 창출 효과 등 성장가능성</td></tr>
<tr><td rowspan="2">기대효과</td><td>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td></tr>
<tr><td>상품화 가능성</td><td></td></tr>
<tr><td colspan="2">총점</td><td>100점</td></tr>
</table>
</td></tr>
<tr><td>가점사항</td><td>최대 5점
(서류평가 반영)</td><td>
<table>
<tr><th>분야</th><th>우대지원대상</th><th>가점</th></tr>
<tr><td rowspan="9">모든 분야

(최대 5점)

*별도 기준 표기가 없는 항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td><td>대표자 중증장애인 여부</td><td>1점</td></tr>
<tr><td>여성기업 여부</td><td>1점</td></tr>
<tr><td>장애인 고용기업 여부</td><td>1점</td></tr>
<tr><td>사회적기업 여부
(지역형 및 부처형으로 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도 가능)</td><td>1점</td></tr>
<tr><td>장애인 대표자 청년 여부(만 39세 이하인 자)</td><td>1점</td></tr>
<tr><td>장애인 대표자 저소득 여부</td><td>1점</td></tr>
<tr><td>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
(당해연도 포함 최근 2년 이내 교육만 유효)</td><td>1점</td></tr>
<tr><td>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td><td>1점</td></tr>
<tr><td>센터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td><td>1점</td></tr>
<tr><td>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증)</td><td>1점</td></tr>
</table>
</td></tr>
</table>

6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지원금 산정 및 협약체결

○ 지원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며 잔여 개발비용, 부가가치세,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의 본인부담금은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10%~30% 이상과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선정기업 본인부담금으로 함

기업규모	정부지원금 비율(A)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비율(B)	사업비 (C=A+B) *부가세 등 미포함
	①제품디자인 (최대 1,000만원)	②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최대 2,000만원)	③시제품금형 (최대 3,000만원)		
중기업	70% 이내			30% 이상	100%
소기업	80% 이내			20% 이상	
예비창업자	90% 이내			10% 이상	

[예시 1]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단위 : 원)

구분	제작비 총액 (①+②)	정부지원금 한도①	선정기업 부담금 ②사업비	선정기업 부담금 ③부가가치세	총사업비 (①+②+③)
예비창업자 (지원금 90%+사업비 10% 이상)	22,500,000	20,000,000 (90% 이내)	2,500,000 (10% 이상)	2,250,000	**24,750,000**
소기업 (지원금 80%+사업비 20% 이상)	25,000,000	20,000,000 (80% 이내)	5,000,000 (20% 이상)	2,500,000	**27,500,000**
중기업 (지원금 70%+사업비 30% 이상)	29,000,000	20,000,000 (70% 이내)	9,000,000 (30% 이상)	2,900,000	**31,900,000**

[예시 2] 시제품금형 (단위 : 원)

구분	제작비 총액 (①+②)	정부지원금 한도①	선정기업 부담금 ②사업비	선정기업 부담금 ③부가가치세	총사업비 (①+②+③)
소기업 (지원금 80%+사업비 20% 이상)	37,500,000	30,000,000 (80% 이내)	7,500,000 (20% 이상)	3,750,000	**41,250,000**
중기업 (지원금 70%+사업비 30% 이상)	42,860,000	30,000,000 (70% 이내)	12,860,000 (30% 이상)	4,286,000	**47,146,000**

○ <u>원가조사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확정하여 협약체결</u>

* 정확한 원가분석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협약 후 7일 이내에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한 본인 계좌에 **기업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해야 함. **미입금(미제출) 시 선정·지원 취소**

□ 지원금 지급

※ 본 사업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 등 전 과정 의무 진행
 * 진행절차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정보공시 등
※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함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정하고 있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될 수 있음.** (협약 체결 이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것)

구분	① 제품디자인	②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③ 시제품금형
최대금액	1,0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3,000만원 이내
지급시기	1차 지급: 중간결과물 현장점검(평가) 후 지원금의 30% 지급 2차 지급: 최종결과물 현장점검(평가) 후 지원금의 70% 지급		

□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첨부2]

7 선정기업 결과물 제출

※ 센터는 결과물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정산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득한 후 위탁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최종 점검에 따라 지원금 지급, 환수, 제재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 중간결과물

○ **(제출기한)** 협약기간의 1/2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
○ **(제출내용)** 중간보고서, 중간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등

□ 최종결과물

○ **(제출기한)** 협약종료일 이내
○ **(제출내용)**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지정양식), 지출증빙서류 등

8 기타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저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사업성과물 활용)**

- 선정기업은 창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원한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함.
- 센터는 해당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행물 게재, 홍보 등 대외 발표 시에 지원 내용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발표 및 활용할 수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또한, 운영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 조치를 취함

○ 사업기간 중 운영지침에 변경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은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함

첨부1 사업비 계상기준

구 분	기 준
인건비 (제품디자인 분야만 해당함)	**인건비는 디자인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뜻함** 가. 디자인회사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전년도 원천징수총액/12)에 참여 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 (*참여율이란 개발자 1인의 개발수행 능력 최대치를 100으로 기준 하였을 때 타 과제 대비 본 개발과제 참여 정도를 뜻함) 나. 인건비(제품디자인 분야)는 디자인개발비의 80% 이하로 산정함 다. 인건비 산출은 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을 근거로 하며 개발 도중 변동되는 급여 증감액은 본 개발과제의 인건비에 반영할 수 없음 라. 외부개발 참여 인력은 위촉 또는 위탁으로 구성하되 제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만 가능하며 책임급은 외부참여자로 지정할 수 없음 마. 내·외부 개발자의 직급은 아래 직급기준표를 따라 기재하며, 모든 직급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교수 참여자의 인건비는 총인건비의 30%를 넘지 못함 바. 개발 도중 계획에 없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게 될 경우, 개발 참여인력 변경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사.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개발 인력의 참여 기간은 1개월 단위로 기재함 **<내·외부 개발자 직급기준표>**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기능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디자인관련학과)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11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기사자격증 소유 및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디자인관련학과)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6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기사자격증 소유 및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디자인관련학과)이수 후 경력 3년 이상의 소유자(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4년) ○기사자격증 소유 및 1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디자인관련학과) 이수 후 경력 1년 이상의 소유자(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2년) ○기사자격증 소유자

구 분	기 준

<내·외부 개발자의 인건비 세부산정 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산정기준

내부 인건비

구분	세부산정 방법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계약서(※실지급액 기준)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급여총액(연말정산기준)/12 × 참여기간 × 참여율	전년도 급여 총 지급 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中 1택

※내부인건비 적용 대상은 제작기업의 4대 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력을 뜻함

※근무년수 1년미만인자 또는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경우), 반드시 연봉제를 적용한다.

외부 인건비

구분	세부 산정 방법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외부업체(기관)에 근무연수 1년 이상 소속된 자	소속업체에서의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中 택 1, 직급 증빙서류 각 1부
기타(프리랜서) ※제품디자인분야 전문인력만 참여 가능 (상단직급기준표 참조)	-선임급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원급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기술기능직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금액은 연도별 노임단가에 따라 변경가능	직급 증빙서류 각 1부 ※ 책임급 외부참여자는 과제참여 불가

■ 공통 제출서류

1)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센터서식) 및 첨부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센터서식)

※ 개별참여자별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 직급 증빙서류 (해당자 한해 제출)

1)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증증명서 1부

2) 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경력기간 내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디자인회사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현황 사본 1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中 택 1)**

**** 제품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책임급의 경우만 증빙서류(경력, 학력 등 자격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제출**

***** 일반디자인 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개발인력(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한 증빙서류 (경력, 학력 등 자격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제출**

구 분	기 준
기구 (금형) 설계비	**기구(금형)설계비는 제품디자인의 양산을 고려해 재료 선정, 가공방법, 설계의 최적화(가공 또는 조립·분해용이), 비용, 품질, 제작에 요하는 시간 등을 검토하여 실제 제품으로 일정량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비용임** 가. 제작기업에서 외주를 주는 경우에만 계상하며, 제작기업 또는 선정자가 자체적으로 기구설계가 가능할 경우는 기구설계비용을 책정할 수 없음 나. 제작기업 내부 인력이 기구설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노무비로 계상함
재료비	**재료비는 제작기업에서 구입하는 재료비용을 뜻함** 가. 재료 구입비는 개발기간 중 개발과 관련된 재료 구입에 한정하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나. 가공항목별로 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을 필히 기재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
외주 가공비	**외주가공비는 제작기업에서 제작하지 못해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함** 가. 모형 및 견본 제작비, VR(Virtual Reality)제작, 사진촬영비, 인쇄시안물 제작비, 출력비, 자료 대여료 등을 포함하며 작성 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작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정산 시, 외주업체에서 제작기업(디자인회사, 금형제작회사 등)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외주업체와의 거래는 불인정
노무비	**노무비는 제작기업의 소속 인력이 가공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뜻함** 가. 노무인력 및 가공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업내용, 작업시간, 단가, 금액 등 세부적으로 작성 ※ 신청시 제작기업 보유인력이 명시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中 택1 (단기 고용인의 경우, 근로 계약서) 제출
제조 경비	**제조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뜻함** 가. 노무비의 10% 이내로 계상함(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개발기간동안 제작기업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의 감각상각비 또는 운반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뜻함** 가. 노무비+재료비+제조경비의 7% 이내로 계상함 (제품디자인 분야는 인건비의 6% 이내)
위탁 회계 정산비	**위탁회계정산비는 디자인회사 및 제작기업에서 사용한 개발비가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탁회계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뜻함** 가. 선정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반드시 책정해야 함
제작 기업 이윤	**제작기업 이윤은 제작기업의 순수 이윤을 뜻함** 가. 노무비+제조경비+일반관리비의 25% 이내로 계상함 (제품디자인 분야는 인건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첨부2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지원금	
중단	□ 선정기업이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간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주관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사업 정상수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잔액 환수	
	□ 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포기	□ 취업, 시제품제작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 기타 선정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실패	□ 적용기술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시제품제작에 실패한 경우 (귀책사유가 선정기업에게 없는 경우)	1년	잔액 환수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미완료	3년	전액 환수	
	□ 시제품제작이 완료는 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시제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성실 실패)	1년	면제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선정취소	
	□ 선정 이후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 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집행 가능	-	-	주의
	○ 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 금액 환수	-	해당금액 환수	

* 선정기업이 정부지원금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됨

* 중단 : 주관기관의 점검 등으로 인한 중단조치

* 주의 2회 = 경고 1회

* 참여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첨부3 자주하는 질문(FAQ)

1 신청 및 선정

Q. 제품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A.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은 제품디자인이 아니므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야	개념	예시
제품 디자인 (지원분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써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디자인 • 생활용품, 레포츠, 취미 및 의료기기 디자인 • 사무기기 및 문구, 아동용구 및 교육용품 디자인 • 산업기계 및 운송기기, 주택설비 및 가구디자인 등
시각 디자인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	• 포스터·광고디자인 :포스터, 신문, 잡지, 인쇄광고디자인 등 • 북·편집디자인 :북디자인, 애디토리얼디자인(신문·잡지·카탈로그) 등 • 프로모션디자인 :캘린더, 문구류, 티셔츠, 카드디자인 등 • 타이포그라피디자인 :타입페이스, 폰트, 캘리그래피 등 • 아이덴티티디자인 :C.I, B.I, 도시아이덴티티 등 • 정보디자인 :정보그래픽, 다이어그램, 픽토그램, 뉴스그래픽, 안내도 등 • 일러스트레이션·캐릭터디자인 :출판일러스트, 갤러리일러스트, 캐릭터, 만화 등
포장 디자인	생산된 제품의 기술적 포장기법, 효율적 마케팅, 재활용 및 환경보존의 개념과 기능을 고려하고 심미성과 구매성의 동기를 줄 수 있는 상품 포장디자인	• 박스 및 표면디자인 :제품의 보호, 유통, 사용 등의 기능을 위해 각종 재료로 포장, 3차원적 기법을 통한 구조물 • 라벨디자인 • 용기디자인 • POP디자인 :포장상품의 효과적 진열을 위한 구조디자인과 표면디자인이 결합된 입체물
환경 디자인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환경제품디자인, 실내디자인 및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등	• 환경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 공공디자인(옥외시설물 등) :자동차 관련시설물, 스트리트퍼니쳐, 주거단지의 공용시설물, 공원리조트, 키오스크, 공중전화부스, 사람을 위한 각종 환경시설물 • 환경색채 및 조형물 :사무용빌딩, 공공건물, 관공서, 공항, 병원, 학교, 주유소, 주택, 종교건축물 등의 슈퍼그래픽, 바닥패턴, 배너(Banner)류,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각종 환경조형물 • 실내디자인(공간디자인) :주거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전시공간, 특수공간 등의 각 공간에 대한 실내디자인 및 요소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정보소통의 효율성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인터랙티브, 이미지, 사운드, 모션,텍스트를 통합한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콘텐츠디자인	• 인터랙티브 디자인 :웹사이트 디자인(포털/기업/커뮤니티/프로모션 등), 디자인, 안내시스템디자인, 키오스크디자인, 리치미디어 • 영상디자인 :모션그래픽, 광고/홍보영상, 뮤직비디오, 인터넷광고, 3D 입체영상 • 애니메이션 :2D/3D 애니메이션, 플래시애니메이션 • 미디어파사드디자인 :건물외벽에 LED조명 등을 비춰 영상을 표현함으로써 미디어 기능을 구현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 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	• 공공서비스디자인 :공공정책, 공공서비스 개발 국민건강, 복지, 고령화, 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 제조·서비스 융합 서비스디자인 :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 신서비스모델 개발 • 서비스산업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등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신서비스모델 개발
기타 디자인	• 디자인 기반의 인프라 및 융합디자인 등 새롭게 출현한 디자인 분야	• 디자인 이론/연구개발 :이론, 문화, 역사, 트렌드, 조형, 연구 및 출판 등 • 디자인 경영 :경영, 마케팅 및 유통, 평가, 컨설팅 등 • 디자인 정책 :법률, 행정, 디자인관련기관, 비즈니스 등 • 기술융합디자인 :로봇, IoT, VR, AR, 빅데이터, 커넥티드 등 • 감성융합디자인 :CMF, 감성디자인 등

Q.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 혹은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분야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경우, 최종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센터에 제출해야하며, 협약기간 1/2 시점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제작기업이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나요?

A. 본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이 제작기업을 컨택해서 신청하는 컨소시엄 형식이기 때문에, 참여기업에서 제작기업의 금형제작능력을 검증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센터에서는 제작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주형 및 금형 제조업)과 제작기업 참여확인서를 필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참여확인서 내에 제작기업 경력 현황(해당분야 유사 개발실적, 해당분야 전문 참여인력 이력 등)을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작기업 능력을 확인합니다.

Q.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분야 상관없이 한 가지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가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신청해도 되나요?

A.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 본인부담금(현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제품디자인 분야는 1,000만 원 이내,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분야은 2,000만 원 이내, 시제품 금형 분야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별 구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따라 필요한 액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전문 원가조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실제 지원되는 금액(천 원 이하 절사)이 조정(확정)될 예정입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잔여 개발비용 등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Q. 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서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중기업)를 통해 지원금 비율과 기업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분야별 선정 건수보다 신청이 적으면 탈락하는 신청자 없이 모두 선정이 되나요?

A. 아니요.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지역별 안배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2차 발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1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자(기업)는 센터가 안내하는 2차 발표심사 일정에 신청기업 대표와 제작기업 과제담당자가 의무 참석하셔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제출한 신청서 등을 활용하거나 ppt를 준비해서 발표해도 됩니다. ppt로 준비해오실 경우, 발표심사 전날까지 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표심사는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발표 1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5~10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발표심사 시 참여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협약체결 및 지원금

Q. 선정 후 협약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전문 원가조사기관 분석을 통해 지원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 금액을 각 선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협약은 센터-선정기업-제작기업 3자 협약**으로 진행하며 개별 안내해 드리는 일정대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하며(기간 유효), 지원금의 30%는 중간보고서 점검이 완료된 이후, 지원금의 70%는 최종보고서 최종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 환수 조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지원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정하고 있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될 수 있음 (협약체결 이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것)**

3 활동 및 최종결과물

Q. 사업계획서 내용과 사업 수행 방향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비의 비목 변경, 제작기업 변경, 개발 목표 변경 등 사업 수행 방향이 달라지면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 발생 시, 센터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비목별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용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내역에 따라 추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의 증빙서류는 불인정되오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구분(비목)	제출서류
인건비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재료비	제작기업의 과제 관련 재료구입의 모든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순번-품병-규격(재직)-단위-수량-단가-금액-사용 용도] 기재
외주가공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거래명세서)
기구(금형)설계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거래명세서)
노무비 및 제조경비	<별지 제29호서식>노무비 및 제작경비 영수증
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이윤	<별지 제30호서식>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이윤 영수증
위탁회계정산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 내역에는 반드시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센터는 선정기업(제작기업)이 제출한 증빙의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